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2. 9.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출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
- 제출일자: 2022. 1. 26.(수)
- 회부일자: 2022. 1. 26.(수)
- 상정 및 의결: 제2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2. 2. 9.)

2.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2019년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면적, m ²)	정원 (예상)	시설특성	비고
진천역 라온프라이빗센텀 내 어린이집	진천동 555-8번지 일원	지상 1층 (274.49)	63	관리동 의무어린이집 무상사용협약체결 입주민자녀 70% 우선 입소권 부여	585세대
월성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내 어린이집	월성동 682번지 일원	지상 1층 (414.1)	96	관리동 의무어린이집 무상사용협약체결 입주민자녀 70% 우선입소권 부여	1,392세대

※ 보육시설 정원은 내부시설 개·보수 후 면적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나. 위탁개요

○ 위탁내용

- 어린이집 운영(아동 입소·상담 등 보육, 인사·회계 등)
- 어린이집 시설 및 물품 등 재산관리

○ 위탁기간: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

※ 진천역 라온프라이빗센텀과 월성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아파트 어린이집 중복신청 불가

4.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 및 제16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6조 및 제7조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동의안은 진천역 라온프라이빗센텀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월성삼정 그린코아포레스트 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585세대 규모의 진천역 라온프라이빗센텀 내 어린이집은 연면적 274.49m²로 약 63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으며, 1,392세대 규모의 월성 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내 어린이집은 연면적 414.1m²로 약 96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음.
- 두 아파트 모두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으로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 정원의 70%)⁶⁾를 입주민 자녀가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위탁업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 운영기준 등) 제2항 후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하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사무의 위탁절차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위탁운영에 있어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보육료 책정, 직접 운영 등의 위탁운영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른 별표 8의3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보육의 우선제공을 할 수 있음.